

대구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1132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21. 11. 12. 접수 제154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17. B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52,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12. 17.부터 2015. 12. 1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7. 11.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68,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D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C의 대표이사이던 B은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B은 2021. 11. 12. 자신의 처이자 나머지 1/2지분권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11.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은 이후 계속 연장되었는데, 원고는 2021. 12.경 D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22. 3. 22. D은행에 68,643,130원, 2022. 3. 23. 중소기업은행에 136,715,94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B 및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C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2. 3. 22.과 2022. 3. 23. B 및 C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E, D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은 가액 5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하였던 사실, 반면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채무 205,359,076원, ② F은행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③ G은행에 대한 채무 255,600,000원, ④ 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67,607,000원, ⑤ D은행에 대한 채무 1,474,917,158원, 합계 2,403,483,234원으로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B의 피고에 대한 채무 900,000,000원(2020. 4. 20. 300,000,000원, 2020. 6. 23. 600,000,000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이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도 마스크 원자재, 마스크 제조기계, H 및 I에 대한 채권, 오피스텔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2021. 8. 22. 주식회사 J에 C의 자산을 모두 매각하였고 그에 따라 I가 2021. 9. 15.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C(대표이사 I)는 2021. 12. 3. C의 마스크 제조기계를 D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점, ③ 한편 C의 소재지인 경산시 K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은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 내지 그 매도대금은 B의 적극재산에 산입할 수 없는 점, ④ B이 오피스텔분양권에 관한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년 작성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2020년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은행거래계약서만으로는 B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위 각 재산의 실질적 가액이 앞서 살펴본 소극재산의 가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전업주부로 남편인 B의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B 및 C의 재정 상태에 잘 알지 못하였고, B이 2020. 6. 30. 600,000,000원을 변제기 2021. 6.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기에 2021. 11. 12.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1. 10. 1. C의 사업장 소재지 토지 및 그 지상공장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B 및 C의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13230㎡

전유부준의 건물의 표시

제1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47.00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3230분의 50.252

단, 지분 1/2(갑구 6번) -이상-

